

FwDV 7 일부발체

소방대복무규정 7(Feuerwehr-Dienstvorschrift 7)

2005 일부개정판

호흡보호 (Atenschutz)

목차	
1	일반사항(생략)
2	호흡보호의 정의(생략)
3	공기호흡기 착용대원에게 요구되는 사항(생략)
4	책임 및 임무분배(생략)
5	호흡보호장비(생략) 5.1 호흡보호장비의 분류(생략) 5.2 면체의 착용(생략)
6	기초 및 심화훈련(생략)
7	현장활동 기본원칙 7.1 일반적인 현장활동의 기본원칙 7.2 폐쇄형 호흡보호장비 착용 현장활동의 기본원칙 7.3 필터형 호흡보호장비 착용 활동 시 기본원칙(생략) 7.4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 7.5 조난경보기 7.6 긴급조난보고
8	호흡보호장비의 유지관리(생략)
9	서류기록(생략) 9.1 개인별 공기호흡기 착용 이력카드(생략) 9.2 장비이력카드(생략)
부록1	용어의 정의
부록2	소방대사고예방규정(GUV-V C53)의 관련 내용 발체
부록3	삭제
부록4	양압공기호흡기 착용대원의 기초/심화훈련을 위한 기본훈련지침 예시

생략

7. 현장활동 기본원칙

7.1 일반적인 현장활동의 기본원칙

- 모든 공기호흡기 착용대원들은 자신들의 안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 공기호흡기는 위험구역 밖에서 착용하고 위험구역 밖에서 벗어야 한다.
- 착용 전에는 활동 전 약식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 공기호흡기 착용 활동을 2회 실시할 경우에는 중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 ※ 일반적 권장사항 : 1일 최대 2회 착용/ 1시간 중간휴식/ 종료 후 2시간의 회복기간
- 활동대원의 체액 소모에 대해 적절한 음료수로 보충한다. 음식과 음료를 먹기 전과 먹을 때에는 위생에 유의한다.

7.2 폐쇄형 호흡보호장비 착용 현장활동의 기본원칙

7.1항의 기본원칙에 더하여 폐쇄형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현장활동 기본원칙이 적용된다.

- 공기호흡기 착용 활동 시 항상 조단위(1명의 조장과 최소 1명의 조원)로 실시해야 한다. 하나의 조에 속한 대원들은 특히 면체를 연결하고 공기호흡기가 안전한 위치에 있는지, 각 연결라인들이 제자리에 있는지와 결착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서로 도와주어야 한다.
- 공기호흡기 착용조는 현장활동 할 때는 물론, 철수할 때도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
- 조단위로 활동해야 하는 기본원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 컨테이너나 좁은 맨홀을 오르는 경우가 그 예로 이때에는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고려하여야 한다. 하나의 공기호흡기 착용조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종류의 공기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 모든 활동현장에는 투입된 공기호흡기 착용조를 위해 최소한 1개 이상의 동료대원구출조(최소 2명)를 대기시켜야 한다. 현장의 위험도와 투입된 공기호흡기 착용조의 수에 따라 동료대원구출조의 수가 상향된다. 이것은 특히 터널과 지하주차장 등과 같이 규모가 큰 대상물에서 유효하다. 동료대원구출조는 예상되는 조난상황에 대비해 적절한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공기호흡기 착용조에게 광범위한 위험배제가 가능하거나 동료구출조가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고도 구조가 가능한 활동현장(예: 노천에서의 화재진압)에서는 동료구출조를 대기시키지 않아도 된다.
- 여러 공기호흡기 착용조가 밖에서 보이지 않는 여러 경로로 내부진입한 경우에는 각 진입 경로별로 최소 하나의 동료구출조를 대기시켜야 한다. 동료구출조의 수는 현장지휘관이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동료대원구출조의 대원은 면체와 함께 공기호흡기를 활동 전 약식점검을 실시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구조장비(예 : 간이구조들것)를 휴대하고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 면체에 라인을 연결하지 않아도 되지만 즉시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기호흡기는 차량 뒷좌석 대원탑승간에 장착되어 있는데, 차량이 정차가 되고 나서야 수납대에서 탈착이 되어야 한다.

- 현장투입 전 공기бом베의 충전량이 만충량의 90%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 공기호흡기 착용조의 조장은 현장투입 전과 현장활동 중 본인과 조원을 관리해야 하는데 특히, 봄베잔압을 잘 체크해야 한다.
- 철수를 대비해서 원칙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소모했던 봄베압력의 2배를 남겨놔야 한다.
- 공기호흡기 착용조의 현장활동시간은 대원 각자의 상황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공기소모량이 가장 중요하다.
- 각각의 공기호흡기 착용조는 원칙적으로 한 대의 무전기를 휴대한다. 공기호흡기 착용조 안전감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현장에서는 무전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 면체를 봄베라인에 연결한 이후에는 목표지점에 도달하였거나 철수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공기호흡기 착용조 감시담당자에게 보고를 해야 한다. 추가적인 보고는 상황에 따라서 생략할 수 있다.
- 투입된 공기호흡기 착용조에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휴대용무전기의 교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크하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무전교신이 두절되면 동료구출조는 무전교신이 재개되거나 공기호흡기 착용조를 만날 때까지 현장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즉시 새로운 동료구출조를 대기시켜야 한다.
- 투입된 공기호흡기 착용조가 호스를 전개하지 않고 들어간 상태라면 퇴로표시는 다른 방법으로 확보해야 한다(예: 소방로프 또는 경로확인용 로프시스템). 무전교신이나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하는 것은 퇴로확보를 하는 데 있어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
- 공기호흡기 장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밸브의 열림상태를 표시하고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밸브가 닫힐 때까지의 회전수 포함). 봄베의 잔압 역시 서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공기호흡기(면체 포함)는 점검을 해야 한다. 사고의 발생 또는 사고발생 직전 발견 사항은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3 ~~필터형 호흡보호장비 착용 활동 시 기본원칙(생략)~~

7.4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

폐쇄형 호흡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실시하는 현장활동 및 훈련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는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진입한 임무조의 봄베잔압을 체크하여 이들을 지원하는 행위이다. 또한, 공기호흡기 착용 활동의 기록도 수반된다.

전술적 단위출동대의 각 지휘관들은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의 책임이 있다.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에 있어서는 적합한 다른 대원을 지정하여 지원하도록 한다. 여기서 적합한 대원이라고 함은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에 대한 원칙을 인지하고 있는 대원을 말한다.

도달 목표지점까지 진입하는데 있어 1/3 지점과 2/3 지점에서 도달했을 때 해당 공기호흡기 착용조의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를 통해 bombe의 잔압을 알려야 한다.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의 기록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해야 한다.

- 공기호흡기 착용대원들의 이름(경우에 따라서는 무전호출명도 포함)
- 면체에 bombe의 공기라인을 연결한 시간
- 목표지점 전 1/3 및 2/3지점 도달 시간
- 목표지점 도착시간
- 철수개시 시간

개인별 공기호흡기 착용 이력카드에는 착용대원의 이름, 실시날짜, 활동장소, 착용장비의 종류, 활동시간을 기록한다.

공기호흡기 착용대원 안전감시를 위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보조도구가 있다.

7.5 조난경보기

조난경보기는 조난당한 공기호흡기 착용대원의 수색에 있어 시각적 또는 청각적인 신호를 통해 조난대원의 발견을 용이하게 해준다.

따라서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투입되는 모든 대원들이 조난경보기를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조난경보기의 취급에 있어서는 제조사의 사용자메뉴얼을 따르도록 한다.

7.6 긴급조난보고

긴급조난보고는 위급한 상황에 놓인 대원들이 무전을 통해 구조를 요청하는 행위이다.

긴급조난보고는 암호명 “mayday”로 명확하고도 혼동되지 않게 표시된다. 이러한 암호명은 모든 조난상황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긴급조난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암호명 : mayday, mayday, mayday

조난요청대원 : 여기 <무전호출명>
<현재위치>
<상황>

종료무전 : mayday, 응답바람!